

중재법 개정연구*

- 개정 방향과 개정안 제19조~제27조를 중심으로-

정 선 주**

〈목 차〉

- I . 들어가며
- II . 중재절차에 관한 총칙규정
- III . 중재지
- IV . 중재절차의 개시
- V . 언 어
- VI .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 VII . 구술심리 및 서면절차
- VIII . 당사자 일방의 해태
- IX .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
- X .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협조

중재법개정(안)(제19조~제27조)

* 본 논문은 1999년 2월 27일 한국중재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개최한 “중재법 개정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I. 들어가며

중재절차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하여 현행 중재법은 단 3개의 條文으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절차에 관한 제7조¹⁾, 증거조사에 관한 제8조²⁾와 법원의 협조에 관한 제9조³⁾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에 비해 중재 절차의 중요한 장점의 하나로서 드는 것은 절차진행에서의 자유로움이다. 중재절차는 법원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하게 법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와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까지 세계 각국의 중재법은 중재절차에 관해 가능한 한 자세한 규정의 입법을 피하고 몇몇의 기본적인 규정만으로 만족하며, 구체적인 절차진행은 당사자나 중재판정부에 맡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당사자가 중재합의에서 절차에 관해서 까지 상세하게 정하는 경우는 드물 뿐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른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점차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에 들어 UNCITRAL 모델법을 비롯하여 각국의 새로운 중재법에서는 중재절차에 관해 종전보다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⁴⁾. 이는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별 어려움 없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중재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에 관해 당사자가 미리 예견할 수 있어 원활한 절차진행에 도움을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재절차에 관해 법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일견

- 1) “① 중재절차는 중재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중재인이 정한다.
 ③ 상사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2) “① 중재인은 중재판정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임의로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선서시킬 수는 없다.”
- 3)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4) 예컨대 독일의 경우 중재절차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하여 舊仲裁法에서는 4개의 조문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개정 중재법에서는 모델법을 수용하면서 제1042조 내지 제1050조에서 비교적 상세히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대한 제한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일일이 중재절차에 관해 정해야 하는 중재판정부의 업무를 오히려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 중재법의 개정작업에서도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중재절차에 관해 어느 정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재법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중재절차규정의 試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다.

II. 중재절차에 관한 총칙규정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18조, 제19조)

“① 중재절차에서 양당사자는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事案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② 이 법의 강행규정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절차에 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③ 前項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절차에 관해 정할 수 있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재량에 따라 증거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⁵⁾.”

2. 이유

(1) 제1항에서는 우선 중재절차의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양당사자의 동등한 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武器平等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에서도 공격방어방법 등을 제출할 때 양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나 헌법의 평등권 이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데서 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독일 기본법의 審問請求權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이 명시적으로

5) 두꺼운 글씨체 부분은 UNCITRAL 모델법과 차이가 나는 내용이다.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데 異論이 없다⁶⁾. 절차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각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에 자신의 事案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 물론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 節次遲延策으로 惡用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却下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중재판정 취소사유 또는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로서 다투어 질 수 있다. “충분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충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정에서 제시한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므로 충분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의 사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⁷⁾.

중재절차에서 양당사자의 동등한 대우와 충분한 진술 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중재법의 節次的 私的自治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즉 중재절차에 관해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중재법의 자유주의적 기본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절차에 관해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自由裁量에 따라 결정하거나 그 어느 경우에서든지 양당사자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事案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違法한 절차가 된다.

(2) 중재절차의 진행에 대해 중재법 자체에서 어느 정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당사자가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중재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미리 예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공한다.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재판정부가 일일이 절차규칙을 정하여야 하는 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6) 대표적으로 이시윤, 민사소송법, 128면.

7) 모델법 제정 당시에도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염려하며 노르웨이 등에 의해 “적당한”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장문철/정선주/강병근/서정일, UNCITRAL모델중재법의 수용론, 375면 이하 참조.

가져오므로 절차에 대한 규정은 필요하다.

중재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을 규율하는 순서는 법률의 强行規定, 당사자의 合意, 법률의 任意規定, 다음으로 중재판정부의 裁量이다. 여기서 중재법의 어떤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임의규정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條文에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면 임의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률의 강행규정이란 법에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상이한 합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규정의 의미와 목적상 당사자의 상이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정을 말하기 때문이다.

중재절차는 법원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私的自治가 폭넓게 인정되는데, 이 점이 바로 중재절차의 장점이기도 하다. 중재절차의 진행에 대해 당사자는 법률의 강행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중재법의 자유주의적 구조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중재 절차에 관해, 특히 적용법규, 절차원칙, 증거조사의 종류와 범위, 각종 기간 및 송달 등에 관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에 대해 개별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자신들의 특별한 요구나 희망사항에 맞추어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 스스로 중재절차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상설중재기관의 표준규칙⁸⁾에 따를 것을 합의할 수도 있으며, 외국의 중재법이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다⁹⁾.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해 합의할 때 당사자는 중재인이 그 임무를 수락한 후에는 중재인의 특별한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절차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중재절차의 진행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광범위한 裁量權도 인정된다. 중재절차에 관해 강행규정이나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고, 또한 법률의 임의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재량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절차 前이나 계속 중에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 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은 당사자의 재량권에 비해 副次的이다. 중재판정부가 재량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8) 예컨대 ICC중재규칙이나 독일 중재협회 규칙 등.

9) 스위스 국제사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兩者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있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합의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재법 자체에서 엄격한 절차규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중재판정부의 절차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것이다. 이로써 중재판정부는 특정 사례의 개별적인 요구에 용할 수 있게 되며, 당사자가 서로 다른 법체계에 속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따라兩體系를 적절히 혼합하여 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절차적 재량권은 특히 국제중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절차적 재량권을 행사할 때 중재판정부는 중재지의 公序良俗, 强行規定 및 일반적인 소송절차원칙에 유념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특정 지역을 중재지로 정할 때는 단순히 교통상의 편의나 숙박시설 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의 법체계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¹⁰⁾.

(3) 중재판정부의 절차적 재량권에는 증거의 채택여부, 관련성, 중요성 및 그輕重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條文에서는 단지 이를 대표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당연히 그 밖의 다른 증거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나, 당사자가 증인이나 감정인을 변론에 동반하여 법관이 증거주제에 대한 논리일관성을 事前에 심사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訴問하는 영미법 국가와의 차이 때문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III. 중재지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20조)

“①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편의 및 당해 사건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前項의 중재지와는 별도의 장

10) Schütze, Schiedsgericht und Schiedsverfahren, Rdnr. 131.

소에서 구술심리, 증인 및 감정인과 당사자에 대한 신문, 중재판정부원의 협의, 물건의 검증 혹은 문서열람을 위해 회합할 수 있다.”

2. 이유

(1) UNCITRAL 모델법이 엄격한 영토주의 입장 (Territorialitätsprinzip)을 취함에 따라 중재자는 중재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중재자는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중재판정을 국내- 또는 외국 중재판정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법원의 관할도 중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중재자는 仲裁判定文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도 하다.

중재지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진다. ICC의 보고에 따르면 중재 사건의 약 80%가 이미 당사자의 중재합의에서 중재지를 결정하거나 늦어도 本案節次의 개시까지 결정하고 있다. 중재지를 결정할 때 당사자는 스스로 중재지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중재기관을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중재지를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중재자는 당사자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으나 중재판정부가 성립된 후에는 반드시 중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중재지를 고려하여 중재인이 선임되기도 하고, 또한 중재인 역시 중재지에 따라 중재인 부탁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재절차 시작까지 중재지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중재자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중재판정부는 사안의 모든 상황과 관련 당사자의 편의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재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이 당해 국가에서 보장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중재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지를 결정하는 경우 모든 審理 및 중재절차와 관련된 모든 會合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반대 합의가 없으면 중재지 이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심리나 증인, 감정인과 당사자신문, 중재판정부 구성원의 협의 그리고 물건의 檢證이나 문서열람을 위해 회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

여 중재판정부가 중재지와는 다른 별도의 장소에서 회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다른 장소에서 회합하여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행위에는 口述審理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장소적 유동성을 더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문에 기재되는 중재지와 실제로 중재절차가 행해지거나 절차의 중요 부분이 행해진 장소가 다르더라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예컨대 명목상의 중재지에서는 전혀 중재절차가 행해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모든 중재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토주의의 입장에 따라 後者의 장소가 중재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3)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해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중재판정부 역시 중재지를 결정하는 것을 잊은 경우 중재지는 실질적으로 중재절차가 행해진 곳이 된다. 그런데 중재절차가 분산되어 진행된 경우, 예컨대 홍콩에서 구술심리가 열리고, 서울에서 증거조사가 실시되고 동경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협의가 행해진 경우, 중재지를 결정하는 데는 구술심리 장소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구술심리가 여러 곳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마지막 구술심리가 열린 장소가 중재지가 된다¹¹⁾.

IV. 중재절차의 개시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21조)

“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절차는 중재를 부탁하는 서면을 피신청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서면에는 당사자와 계쟁물이 표시되어야 하며, 중재합의가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2. 이유

(1) 중재절차의 개시 시점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消滅時

11) Schütze, Schiedsgericht und Schiedsverfahren, Rdnr. 143.

효나 除斥期間의 중단 효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상이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절차는 중재를 부탁하는 서면을 피신청인이 수령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2) 중재절차 개시의 효과는 중재를 부탁하는 서면의 기재사항이 완벽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면의 기재사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 서면의 명칭에 상관없이 - 요구, 신청, 청구진술 등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 서면에는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 분쟁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며, 중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 중재를 부탁하는 서면과 개정 시안 제23조의 “중재신청서”는 구별되어야 한다¹³⁾. 예컨대 請求原因事實은 중재부탁 서면에 미리 밝힐 필요가 없으며 중재신청서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중재신청서는 중재를 부탁하는 서면과 함께 제출된다.

물론 당사자는 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이 규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다른 시점을 중재절차의 시작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機關仲裁의 경우 당사자는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부탁 서면을 중재기관이 수령한 날로부터 중재절차가 시작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V. 언 어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22조)

“①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를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정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12) 독일의 경우 입법의견서에서는 중재를 부탁하는 서면의 기재사항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모델법과는 달리 기재사항을 명시하였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1044조).

13) 모델법은 제21조에서 a request for that dispute to be referred to arbitration으로, 제23조에서는 Statements of claim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前者는 중재를 부탁하는 서면으로, 後者는 중재신청서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중재판정부가 정한 언어는 당사자의 서면진술,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과 통지에 기준이 된다.

② 서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의 첨부를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2. 이 유

(1) 중재절차에서 어떤 언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가 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국내중재에서는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나¹⁴⁾ 국제중재에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재절차에 사용하는 언어는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결정한다.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의 공식언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문제가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중재의 편의성 및 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재절차 언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때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나 관련계약의 체결에 사용된 언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仲裁節次地의 언어는 부수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真意를 해아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언어는 口述審理,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면과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결정 및 각종 통지의 기준이 된다. 중재절차 관계자들이 중재절차의 공식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증인, 감정인을 위해 통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¹⁵⁾.

(2) 중재판정부는 書證의 대상이 된 서면에 대해 중재절차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중재절차 언어에 서툰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번역에 따른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신속성과 저렴성이라는 중재절차의 장점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비용은 중재절차의 필요적 비용으로서 어느 당사자로

14) 국내중재를 염두에 두었던 독일의 舊仲裁法이나 우리의 현행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언어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15) Schütze, Schiedsgericht und Schiedsverfahren, Rdnr. 172.

인해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중재판정부가 판단하여야 한다. 중재 절차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당해 당사자가 부담한다.

VII.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23조)

“① 중재신청인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청구와 청구원인 사실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신청서와 답변서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장래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중재절차 계속 중에 자신의 청구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단, 중재판정부는 이를 행위가 시기에 늦은 데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유

(1) 서면에 의해 중재절차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즉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는 분쟁대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중재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모델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留保可能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請求와 請求原因事實은 訴訟物을 확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는 배제되어야 한다¹⁶⁾. 또한 모델법에서는 중재신청서에 爭點이 표시될 것을

16) 소송에서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을 나누는 변론주의원칙은 중재절차에도 적용되므로 당사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여야 하며, 따라서 중재신청서에 당사자의 사실기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Schütze, Schiedsgericht und Schiedsverfahren, Rdnr. 146.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은 신청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에 비로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서에 쟁점을 표시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신청서나 답변서와 함께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장래 필요한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분쟁과 관련된 서류와 기타 증거목록은 최초 심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며, 각 당사자는 자신들의 소송전략의 하나로서 이들의 제출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이들의 제출시점을 결정하는 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중재합의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촉진을 위해 일반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증거의 요약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출시기를 정할 수도 있다.

(2) 당사자는 중재절차 계속 중에 자신의 청구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 내지 보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나 답변서의 事後 變更 내지 補充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으로 판단하는데, 시기에는 늦은 데 대해 충분히 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遲延의 정도와 이유 및 상대방에게 미치는 절차상의 손해 등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스스로는 변경의 적합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변경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신청서나 답변서의 변경이나 보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규정 역시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변경을 금지시키거나 당연히 허용하거나 일정한 제한에 따르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피신청인의 反對申請에도 적용된다. 즉 피신청인은 자신의 반대신청을 변경 내지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¹⁷⁾.

17) 모델법 역시 반대신청에 대한 적용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mutatis mutandis*의 원칙에 따라 신청에 관한 모든 규정은 반대신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문철/정선주/강병근/서정일, UNCITRAL모델중재법의 수용론, 400면.

VII. 구술심리 및 서면절차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24조)

“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중재 절차의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술심리를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모든 심리에 대해 그리고 증거조사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모든 회합에 대해 適時에 통지되어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 및 기타 정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판정의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나 기타 서증도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2. 이유

(1) 중재절차를 진행할 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심리를 행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원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구술변론이 원칙이지만 중재절차에서는 반드시 구술심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도 사건의 폭주와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중재절차는 법원의 소송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진행방식 등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만 이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술심리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당사자의 審問請求權을 실현한다는 의미¹⁸⁾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중재판정부가 재량에 따라 서면심리의 방식

18)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심문청구권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 BGH RIW/AWD 1985, 970.

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술심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구술심리의 진행여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방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요청한 경우 또는 양당사자가 증거제출에 대해 구술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반드시 구술로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에 대한 당사자의 事後要請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은 제한된다.

둘째, 당사자가 서면절차를 합의한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나중에 구술심리를 요청하면 중재판정부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처음 합의를 무시하고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열 수 있다. 이 규정은 구술심리에 대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합부로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節次遲延과 방해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가 절차진행의 방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의 진행여부에 대해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중재합의에서 당사자가 절차진행 방식을 미리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재절차의 방식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관점이나 증거를 구술심리에서 표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과 이 권리가 중재판정부의 어떠한 재량권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단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중재절차가 부분적으로는 서면에 의해 또 부분적으로는 구술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條文에서 “증거제출이나 구술심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법체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증거를 포함하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증인증거, 감정증인증거, 모든 증인에 대한 交互訊問, 일방 당사자의 증언과 交互訊問이 포함된다. “구술심리”라는 표현은 분쟁의 생점 뿐 아니라 절차상의 생점에 대한 심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모든 구술심리와 물품, 기타 다른 재산이나 문서 조사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모든 會合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事前에 충분히 통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事前通知는 당사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자신의 사건을 준비하고 진술하도록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는 公正性의 원칙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懶怠한 경우 절차를 속행하는 데 조건이 될 만큼 중요하다.

이 규정은 원칙만을 표현하고 있으며, 누가 (예컨대 중재판정부, 의장 중재인, 사무국 또는 중재기관)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통지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규칙 등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이 중재규칙에 따를 수 있을 것이다¹⁹⁾.

(4) 중재절차에서 양당사자는 모든 정보에 대해 동등하고 충분한 접근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모든 서류, 감정인의 모든 감정서와 중재판정의 기초가 되는 기타 다른 문서의 簿本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공정한 절차진행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기타 다른 문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실제로 누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 전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재판정부 (또는 관련기관)가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에게 簿本을 송부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중재판정부 스스로 일방 당사자의 진술이나 문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VIII. 당사자 일방의 해태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25조)

“①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9) 장문철/정선주/강병근/서정일, UNCITRAL모델중재법의 수용론, 403면.

②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결석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속행하여 지금까지 인지한 내용을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해태에 대해 충분히 변명한 경우에는 해태가 고려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해태의 결과에 대해 달리 합의할 수 있다.”

2. 이유

(1)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자신의 역할부분을 이행하지 않고懈怠한 경우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해태의 결과를 상세하게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규정에 나타난 해태의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태한 당사자에게事前에 충분히 요청되거나 통지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충분한 자유를 제시하지 않고 해태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는 해태의 결과에 대해 달리 합의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해태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아직 중재신청서가 제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정으로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중재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중재계속의 효과가 종료되어時效中斷의 효과도 없어진다. 그리고 중재인의 직무도 종료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비용판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재비용에 관해 판단하여야 한다²⁰⁾.

(3) 피신청인의 해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그러한 태도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

20) Schütze, Schiedsgericht und Schiedsverfahren, Rdnr. 190.

여야 한다. 이는 피신청인이 방어의사를 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재 자체가 무위로 끝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점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해태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自白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3항)과 비교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당사자의 해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중재판정부에게 전혀 재량권이 없다거나 신청인의 請求와 모든 請求原因事實을 피신청인이 전면적으로 否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재판정부는 구체적인 사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신청인의 해태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도 있다.

(4) 당사자 일방의 해태

일방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서면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이미 제출된 증거와 지금까지 인지한 내용을 근거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권한 속에는 당해 증거에 대해 절차상 제한된 특정 기간을 경과한 후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서면증거를 허용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요구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일방 당사자의 해태로부터 나름대로 추론할 수도 있다.

(5) 당사자 쌍방의 해태

양당사자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시키지 않는 경우, 즉 심리에 불출석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요구한 서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중재절차를 속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종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재절차 종료에 관한 규정²¹⁾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명시적 조항을 이 곳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

(6) 규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口述審理의 缺席”은 당연히 당사자가 충분히 事前에 통지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나 당사자가 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증거제출에 대한 요구가 행해져야 한다.

21) 모델법의 경우 제32조 참조.

IX.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26조)

“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판단하여야 할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해 관련 문서, 물품 등을 제출하거나 감정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감정인은 이미 감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심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구술심리에서 양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私鑑定人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해서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유

(1) 本條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관한 것이며,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私鑑定人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本條에서는 법원에 의해 감정인이 지정되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영미법 국가를 고려하여 私鑑定人 (expert witness)의 사용 가능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내중재 뿐 아니라 국제중재에서도 중재절차에는 법률가들이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데 기술적이거나 상거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중재절차에서 감정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특별한 권한수여가 없더라도 특정 쟁점에 대해 보고할 1人 내지 數人の 감정인을 지정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감정인에게 협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당사자는 감정인의 직무수행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감정인 지정 권한을 배제시킬 수 있다. 중재인에 대한 당사자의 신임이 반드시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감정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의견을 구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私的自治를 우선하여 당사자에게 배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어떤 수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당사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공정한 중재판정을 위해 중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인 지정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당사자가 배제시키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어쨌든 당사자는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중재판정부의 감정인 지정 권한을 배제시킬 수 있으며, 최초의 중재인이 선임되기 전에만 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감정인 선정계약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중재당사자의 이름으로 중재판정부에 의해 체결되어진다. 그러므로 중재판정부는 신중을 기해 감정인을 지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하거나 口述로 鑑定報告를 한 후에도 감정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지며, 쟁점사항에 대한 증언을 위해 개인적으로 감정인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기회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혹은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해 행해지는 구술심리에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재절차에서 감정인은 민사소송절차에서와는 달리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위해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한데도 감정인이 중재판정부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부의 허락을 얻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는 감정인 선정에 대하여 법원의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감정인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의해 기피될 수 있다. 이 때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 규정이

준용된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에 대해서는 중재인과 동일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어지며, 이로써 私鑑定人과 그 기능상 구분되어진다²²⁾.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감정인의 불공정성에 대한 주장은 중재판정 취소절차나 집행선고절차에서만 가능하다.

X.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협조

1. 시안 (참조: 모델법 제27조)

“① 중재판정부와 중재판정부의 허락을 얻은 당사자는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이 적법한 경우 증거조사에 관한 절차법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할 수 있다.”

2. 이유

(1) 중재판정부는 私人으로 구성된 私的團體이기 때문에 법원처럼 公權力を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특히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법원은 중재절차와 관련된 증거조사, 특히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문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조사를 위해 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실무상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또 때때로 법원에 대한 협조신청이 절차지연의 술책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재판정부 스스로 전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임의로 출석한 증인이나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재판정부가 詢問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22) 우리 중재법 개정시에도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모델법을 대부분 수용한다면, 우리 법제도에는 낯선 私鑑定人과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 모델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 제3항과 같은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증거조사에서이지만 그 밖의 다른 행위, 예컨대 외국에서의 송달이나 公示送達, 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 요청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법원에 대한 협조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허락을 얻은 당사자가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절차지연 의도를 막기 위해 증명주체가 자신의 중재판정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협조 신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당사자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遲延術策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에 대한 협조 신청의 인정여부나 기술적 취급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증거조사규정과 司法體系에 따라 행해진다. 협조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원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증거조사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직접 실시하든지(증인을 訴問하고 문서를 획득하거나 재산에 접근함으로써 그리고 중재인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중재판정부에 통지함으로써), 아니면 중재판정부에 직접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원의 개입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한정된다.

협조는 “관할법원”에 의해 행해지는데, 이 때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이 되어야 한다. 訴問되어야 할 증인의 거주지나 조사되어야 할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서 증거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²³⁾.

(2)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로써 중재판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중재법 개정(안) (제19조~제27호)

<중재절차에 관한 총칙규정>

(참조: 모델법 제18조, 제19조)

“① 중재절차에서 양당사자는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事案을 진술할 수

23) 관할법원에 관해서는 본조 제3항을 신설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② 이 법의 강행규정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절차에 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③ 前項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절차에 관해 정할 수 있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재량에 따라 증거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중재지>

(참조: 모델법 제20조)

“①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편의 및 당해 사건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前項의 중재지와는 별도의 장소에서 구술심리, 증인 및 감정인과 당사자에 대한 신문, 중재판정부원의 협의, 물건의 검증 혹은 문서열람을 위해 회합할 수 있다.”

<중재절차의 개시>

(참조: 모델법 제21조)

“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절차는 중재를 부탁하는 서면을 피신청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서면에는 당사자와 계쟁물이 표시되어야 하며, 중재합의가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언어>

(참조: 모델법 제22조)

“①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를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정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언어는 당사자의 서면진술,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과 통지에 기준이 된다.

② 서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의 첨부를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참조: 모델법 제23조)

“① 중재신청인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청구와 청구원인사실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신청서와 답변서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장래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중재절차 계속 중에 자신의 청구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단, 중재판정부는 이를 행위가 시기에 늦은 데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술심리 및 서면절차> (참조: 모델법 제24조)

“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중재절차의 진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술심리를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모든 심리에 대해 그리고 증거조사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모든 회합에 대해 적시에 통지되어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 및 기타 정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판정의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나 기타 서증도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의 해태> (참조: 모델법 제25조)

“①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

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결석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속행하여 지금까지 인지한 내용을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해태에 대해 충분히 변명한 경우에는 해태가 고려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해태의 결과에 대해 달리 합의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

(참조: 모델법 제26조)

“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판단하여야 할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해 관련 문서, 물품 등을 제출하거나 감정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감정인은 이미 감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심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구술심리에서 양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私鑑定人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해서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 규정을 준용한다”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협조>

(참조: 모델법 제27조)

“① 중재판정부와 중재판정부의 허락을 얻은 당사자는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이 적법한 경우 증거조사에 관한 절차법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질문할 수 있다.”